#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5355 제출연월일: 2024. 11. 7.

제 출 자:정 부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 탁증서 등의 원본 또는 등본을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본 또는 등본을 갖추어 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 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2항 후단 신설 및 제37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#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

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신탁증서의 원본 또는 등본을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본점 또는 지점에서 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본 또는 등본을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. 제37조제2항 중 "원본"을 "원본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)"으로 한다.

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행 개 정 안 혂 제16조(신탁증서의 보존과 열람) 제16조(신탁증서의 보존과 열람) ① (생략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의 신탁증서는 그 원 본을 본점에 갖추어 두고, 등 본을 각 지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. <후단 신설> ----. 이 경우 신탁증서의 원 본 또는 등본을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5조에 따 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 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 당 본점 또는 지점에서 그 전 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확 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본 또는 등본을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. ③ (생략) ③ (현행과 같음) 제37조(등본의 작성) ① (생 략) 제37조(등본의 작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의 등본에는 위탁회사 의 이사나 대표하는 사원이 기 명날인하여 원본과 다름없음을 ----- 원본(「전자문서 및 인증하여야 한다.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5조제2항 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 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

	<u>서를 포함한다)</u>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